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 1994. 2. 24.
교육사회위원회
2.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1994년 2월 14일
 - 회부일자 : 1994년 2월 15일
3. 제안 이유
 -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12.31.)에 의거 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 - 국무총리지시 제3호(총무처 '93.4.23.)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"위원회" 명칭을 "협의회"로 변경하고자 함.
4. 주요 골자
 - "충청북도 학생도서관장관"을 삭제하고, 직급명칭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, "지방행정주사를 "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함 (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).
 - "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"를 "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"로 함 (안 제15조)
 - 부칙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(안 부칙 제2조)
 -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함.

-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하고, "자문위원회"를 "자문협의회"로 함.
-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함.

5. 검토 의견

○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,

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 14042호, '93.12.31.)에 의거 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바꾸고

국무총리지시 제3호(총무처, '93.4.23.)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"위원회" 명칭을 "협의회"로 변경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제4조 제1항중 "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과"를 삭제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(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관한 조례제정공포, 92.1.1)이나,

제73회 임시회(91.11.21~11.25)에 조례개정안 제출시 신중을 기하지 못해 당시에 개정되지 못한 내용으로 향후에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제출 할 것이 요망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